차 용 증

가족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· 상환 기록표 포함

아래 당사자는 가족 간 금전 대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,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차용증 2 통을 작성하여 각각 1 통씩 보관한다.

■ 채권자 **(**빌려준 사람**)**

성 명	
생 년 월 일	
주 소	
연 락 처	

■ 채무자 **(**빌린 사람**)**

성 명	
생 년 월 일	
주 소	
연 락 처	
채권자와의 관계	☐ 부모 ☐ 자녀 ☐ 배우자 ☐ 형제자매 ☐ 기타 ()

■ 약정 내용

제 **1** 조 **(**차용금액**)**	금 원정 **(₩**)
제 **2** 조 **(**대여일 · 지급**)**	20 년 월 일 ☐ 계좌이체 ☐ 기타 () 보낸 계좌 : 은행 (예금주)
제 **3** 조 **(**변제기일**)**	20 년 월 일까지 전액 변제한다.
제 **4** 조 **(**이자**)**	연 % · 매월 일 지급 ☐ 무이자 (최고 연 20%)
제 **5** 조 **(**상환 방법**)**	☐ 매월 분할 : 매월 일 원금 원 + 그달 이자 ☐ 만기 일시 상환 받을 계좌 : 은행 (예금주)
제 **6** 조 **(**지연손해금**)**	연 % (연 20% 이내)
제 **7** 조 **(**기한이익 상실**)**	이자 또는 분할금을 2 회 이상 연체하면 채권자의 통지로 기한의 이익을 잃고 남은 원금과 이자를 즉시 변제한다.
제 **8** 조 **(**상환 기록**)**	채무자는 원금과 이자를 계좌이체로 지급하고, 당사자는 아래 상환 기록표와 이체 내역을 함께 보관한다.
제 **9** 조 **(**특약사항**)**	

■ 상환 기록표 (이체할 때마다 적고 채권자가 확인)

회차	상환 예정일	원금	이자	이체한 날	채권자 확인
1					
2					
3					
4					
5					
6					
7					
8					
9					
10					
11					
12					
합계					

20 년 월 일

채권자 (빌려준 사람)	성명	(인)	서명 · 날인
채무자 (빌린 사람)	성명	(인)	서명 · 날인

가족 간 차용 전에 확인하세요

· 가족끼리도 이자를 안 받거나 낮게 받으면, 적정이자율 연 4.6%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낸 이자의 차액을 증여로 봅니다. 그 차액이 1년에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(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1조의 4 ·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의 4). 무이자라면 원금 약 2억 1,739만 원 미만이 이 기준 안입니다.

· 빌린 기간이 1년을 넘으면 1년마다 새로 빌린 것으로 보고 다시 계산합니다.

· 원금과 이자는 계좌이체로 주고받고 이체 메모에 「차용금 O회차」를 남기세요. 차용증이 있어도 실제로 갚은 기록이 없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.

·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0%입니다. 초과분은 무효입니다.

· 2통을 작성해 각각 1통씩 보관하고 간인을 찍으세요.